

지역소멸과 삶은 개구리 증후군



장 순 희 | 강원대학교 공공행정전공 교수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드러났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6대 목표 중 하나로 들어갔다. 120개 과제 중 마지막은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다.

2020년부터 20년간 진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그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하고, 3대 목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넣고 있다. 더 들어가 2000년부터 20년간 펼쳐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4가지 기본 목표에서도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가 하나로 들어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기본권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위시해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있지만 그 성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을 기점으로 지방 전체의 인구를 추월했으며, 지역내 총생산(GRDP)도 51.8%로 수도권 앞서 나가고 있다. 1000대 기업 본사는 75.3%가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72.1%로 압도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대학을 포함한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문화 등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질적 격차까지 포함하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소멸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은 “소멸위험 시·군·구는 2017년 5월 85개에서 2021년 8월 108개로 4년간 23개가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2021년 10월 2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역소멸을 앞당길 여러 우려들이 현재 도처에 산재해 있다.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우려도 그 중의 하나다. 반도체 산업기반 시설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곳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에서 똑같이 경쟁하라고 하면 지방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교수신문, 2022년 7월 25일). 이는 현실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많은 지방대학과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재촉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지역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바람도 지역소멸을 크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정부가 1982년 제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왔다. 현 정부가 예고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역행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우려를 지니고 있다.

‘한국이 소멸한다’의 저자인 전영수 교수는 우리나라 지역소멸의 위기를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와 살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조만간 닥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역소멸을 향해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소멸과 중국에는 국가 소멸이라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으며, 유사 이래로 총 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나 다양하겠지만, 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외침처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지난한 경쟁 사회의 영향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픔을 넘어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과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져 지방소멸이라는 몸살이 껴차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나 지방대학을 찾아 하룻밤씩 묵어가는 것도 좋을 듯싶다. 급하다고 바늘허리 매어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출처:강원도민일보 기고_장순희 강원대학교 공공행정전공 교수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등 -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함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①2022년 경제정책방향 중 “제도 정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과제
②경제 규제혁신 방안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및 판단기준 명확화” 과제

□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이나,

○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하여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 ①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②비의료적 상담·조언 ③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

○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보사연, 2021)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인증 신청 서비스에 대한 평가·심사 중으로, 9월 중 인증 서비스 발표 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 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하여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②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으나,
 - * 국제기구·정부·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기관과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하였다.
 - * 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

③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하여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④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을 안내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 * 이용자 개인건강정보의 수집·활용 범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관련 등
-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였다.
 - *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관리서비스 중장기 수요 전망(천만명): ('19)6.9 ('25e)7.3 ('35e)7.9 ('50e)7.7
(출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보사연, 2020))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공공)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민간) 약 27개 기업에서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보험사) 약 27개 기업(보험사·자회사)에서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 제공 중

* 생명보험협회 11개 기업 27개 서비스, 손해보험협회 6개 기업 11개 서비스

※ (출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21, 건강증진개발원)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9월 2일(금)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정보 체계적인 수집으로 한 곳에서 공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eq.ndmi.go.kr) 구축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기관별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는 지진방재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 eq.ndmi.go.kr」을 구축하여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신뢰성 있는 지진방재 자료의 수집, 검증, 관리 및 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 발생정보, 지진행동요령, 정책자료, 현장조사, 언론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제공한다.
 - 특히 지진 정책 및 학술자료 등 1,000여 건의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진 분야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 중앙·지자체,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 등 관계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보완하여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 포털 내 지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은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eq.ndmi.go.kr)」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 접속하여 이용하면 된다.
 - * 누리집 접속 후, 알림 창 또는 하단 막대 광고(배너 링크)
-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경주(’16.9.12.)와 포항지진(’17.11.15.)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며 항상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 “다양한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자료들의 체계적인 축적과 활용을 통해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이 지진 피해 최소화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가공식품 판촉 지원한다

- 우체국 쇼핑몰·오아시스몰에서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20% 할인 쿠폰 지급 (~9.30.)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유기가공식품* 판촉행사를 지원한다.
 -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또는 취급되는 식품 및 가공품
- 행사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소비자가 우체국 쇼핑몰(https://mall.epost.go.kr), 오아시스몰(https://www.oasis.co.kr)에서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 * 123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가 참여하여 330여 개 제품 판매
- 이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네이버 실시간 방송판매*를 통해 유기가공식품 판촉을 지원하고, 10월 중순에는 우체국 쇼핑몰 내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운영할 예정이다.
 - * 참여업체: 22개, 판매·홍보 제품: 55개 / ** 코리아세일페스타: 20% 할인 쿠폰행사 진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행사가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기가공식품을 많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최 현 재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1팀장

1. 문제제기

-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제9기 지방의회가 출범함

- <표 1> 지방의원의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현황

구분	정당소속 당선인	무소속 당선인	합계
시·도의원	867	5	872
시·군·구의원	2,843	144	2,987

자료 : 선거통계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출된 지방의원의 대다수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음
 -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광역의회는 의원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되고 기초의회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의원도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됨
- 이에 따라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함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 의견1) 도 있으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된 현행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은 중요함
 - 교섭단체는 입법활동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제도임
- 하지만,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법적 갈등이 발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의 및 역할

-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함
 - 교섭단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함
 -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협의 및 조정, 정당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함
-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1995년 2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지방의회론, 이청수, p.172)
 - 국회는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 2> 광역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규정

구분	교섭단체 구성 근거	교섭단체 구성 기준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0명 이상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	5명 이상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광주	광주광역시 기본 조례	4명 이상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4명 이상

울 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5명 이상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경 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2명 이상
강 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5명 이상
충 북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5명 이상
충 남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전 북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6명 이상
전 남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6명 이상
경 북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6명 이상
경 남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명 이상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3.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의 한계

-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에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되었고(2017. 3. 14), 무효 판결을 받음(2018. 7. 11)
 -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을 그 직원으로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 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임(2017추504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최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조례 제·개정 및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기구 내에 별도의 조직(서울시의회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을 두고 있음)에 배치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4.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 개선방안

-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인력 운영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상위법의 내용은 효과적인 입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지방의회별 의원 정수를 고려한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 등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표 3> 의원 정수별 지방의회 분포

의원수	10명 이하	11~19명	20~29명	30~39명	40~49명	50명 이상	합계
기초의회	107	87	24	6	2	-	226
기초의회	-	-	4	2	6	5	17

출처: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공보안법편



일상 속 법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비행기 잘 이용하는 방법?’

휴가철이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부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이용해야 '잘' 이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국제선 탑승
International
Boarding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 1

유효한 신분증 무엇이 있는지 알고가세요~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개조신고증, 선원수첩 등)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 2

승객의 협조이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음주와 기장 등의 업무를 위해나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승객의 협조이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해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이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해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50조제3항
제2호, 제3호

기장 등의 업무를 위해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제49조제1항

항공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제46조제2항

절대절대



이런 행위를 해선
안 되새령!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해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 3

보안검색 절차 알고 가세요~

「항공보안법」제15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Step.01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탑승권을 출국장 진입 전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주세요.



Step.02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또는 액체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안 검색요원 또는 안내요원에게 알려주세요.



Step.03

휴대물품(가방, 핸드백, 코트 등)을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 놓으세요.



Step.04

소지품(휴대폰, 지갑, 열쇠, 동전 등)은 엑스레이 검색을 위해 바구니에 넣어 주세요.



Step.05

문형금속탐지기 통과 후 보안 검색요원이 검색을 실시합니다.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 4

기내 반입기준 제대로 알고 가세요~

항공기 이용 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은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구분	내용	비고
액체, 겔, 분무류	전체 용량 1L 이하이면서, 개별용기 100ml 이하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투명 비닐 지퍼백 1개)까지만 반입가능	객실반입 ○ 위탁수하물 ○
	전체 용량 1L 초과 또는 개별용기 100ml초과 -단, 개별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이하 까지만 위탁수하물 가능	객실반입 X 위탁수하물 ○
전자담배		객실반입 ○ 위탁수하물 X
보조배터리 (리튬이온)	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객실반입 ○ 위탁수하물 X
	100wh 초과 160wh 이하	객실반입은 항공사 승인필요 위탁수하물 X
	160wh 초과 또는 용량확인 불가	객실반입 X 위탁수하물 X

본 자료는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항 또는 항공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항공보안365 누리집 > 홍보센터 > 인쇄홍보 > 항공보안 금지사항 및 객실·위탁 반입기준 필독 안내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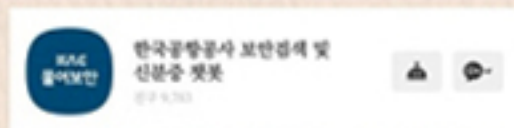
공항 이용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1. 공항탑승수속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공항도착, 항공기 발권부터 항공기 출발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스마트 공항가이드 앱 다운)

2. 물어보안



기내반입금지 물품 헛갈릴때 카톡창에 치기만해도 알려주는 챗봇서비스

3. 바이오정보 신분확인서비스



손바닥 정맥 등 간단한 바이오정보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인증
(만7세 이상부터 사용가능)



모두 슬기롭고 똑똑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비행기 이용할 땐
꼼꼼하게 따져보세령~**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molegin>